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상무상 대여〉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582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58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0. 7.
- (3) 회 부 일 : 2024. 10.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이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없어, 영세 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

2. 검토의견

□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공유재산의 우선 매각이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참고자료 1, 2: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현황).

- 국유·공유재산 특례는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 또는 대부, 양여 등에 관하여 국유·공유재산에 관한 기본법인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특히, 국유재산에 관한 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야 하고, 이 별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음.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별표] 141.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 현재(2024년 10월 기준), 장애인복지시설 중 국유·공유 재산의 유·무상 대부는 30개소, 유·무상 사용·수익은 8개소에서 설치할 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특례 혜택을 받았음.¹⁾

<현행법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10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단체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단체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단체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단체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단체
우선매각	-	-	-	-	-	-	-	-	-	-
유무상 대부	37	-	33	-	35	-	35	-	30	-
유무상 사용수익	8	-	8	-	10	-	12	-	8	-
합계	45	-	41	-	45	-	47	-	38	-

자료: 보건복지부

1)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합한 수치로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여, 제외하였음.

□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관련 시설이 최초 설치된 후뿐만 아니라, 이전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 시뿐만 아니라 ‘운영’ 시에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입법례로서는

①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복지단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② 「아동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도 관련 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아동복지법」

제62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17조(국·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수행기관에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다만,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국유재산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이전 설치가 아닌 단순 운영상 필요의 경우에도 특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표현은 “설치·운영하거나”에서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설치·운영하는 데”에서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데”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외에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도 국·공유 재산을 유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제안 취지에 동의
- 기존 시설 이전 시 시설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유상 또는 무상 대부 사용 수익을 통하여 운영 안정성 확보 필요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2023.12월 기준, 단위: 개소/명)

시도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개소수	현원	개소수	종사자	개소수	참여 장애인
총계	1,529	27,352	1,602	15,965	811	21,225
서울	249	3,013	220	3,157	139	4,115
부산	63	1,209	97	826	43	1,188
대구	52	1,329	70	473	41	1,190
인천	69	906	63	650	41	1,059
광주	80	918	51	496	30	891
대전	84	1,198	74	627	34	848
울산	28	636	56	419	17	325
세종	6	154	9	80	8	199
경기	319	5,464	287	3,513	188	4,682
강원	68	1,447	69	547	40	719
충북	89	1,714	63	618	28	935
충남	54	1,643	66	715	28	783
전북	69	1,560	98	778	29	677
전남	70	1,321	90	768	24	562
경북	92	2,463	118	880	48	1,291
경남	97	1,806	120	828	62	1,352
제주	40	571	51	590	11	409

주1):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수어통역센터, 시각장애인 등생활지원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수련시설, 재활치료시설

주2):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장애인복지단체 현황〉

(2024. 10월 기준)

유형	명 칭	대표자	설립일
재단 법인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04.02.21.
	이형섭복지재단	장석균	08.10.22.
	푸르메	백경학	05.03.09.
사단 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영일	99.04.0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락환	02.12.2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성재	94.12.14.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06.02.09.
	한국농아인협회	최광휴	80.08.30.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81.05.01.
	한국시각장애노인복지협회	조학환	‘12.07.03.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조석영	00.05.25.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진형식	09.03.27.
	한국장애인주거이용시설협회	박영욱	17.10.11.
	국제키비탄한국본부	이연숙	11.09.09.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수성	03.12.13.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정효	81.10.2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석왕	83.05.30.
	한국장애인연맹(DPI)	이영석	02.05.16.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김인규	70.12.04.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황재연	89.07.15.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진완	06.04.11.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양영희	05.07.14.
	한국뇌성마비복지회	김정우	78.10.16.
	한국의지보조기협회	조일호	75.08.28.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박경순	18.04.19.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상헌	06.08.01.
	해냄복지회	김재익	09.03.30.
	자행회	김 우	68.07.04.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09.06.12.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00.10.05.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06.12.26.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86.07.29.

유형	명 칭	대표자	설립일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이정식	68.07.04.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전봉규	97.02.05.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임재영(직무대행)	'22.01.14.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김세룡	93.12.08.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이은경	11.09.09.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태근	'24.03.08.

자료: 보건복지부